

예 산 총 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491,309,115	14,739,273
일반회계		487,158,985	14,614,770
특별회계		4,150,130	124,504
	기타특별회계	4,150,130	124,504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40,137	1,204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99,624	5,989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	74,700	2,241
	주차장특별회계	3,241,005	97,230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	594,664	17,84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56,88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(1) 기준인건비 (2) 재해대책비